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 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1641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이광재·김영환·김남준
오기형·문진석·정성호
이정현·김우영·이재강
진선미·홍기원·박주민
김문수·한병도·맹성규
최기상·정태호·김태년
조승래 의원(19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성장 등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제액, 비과세기준, 공시지가 등 과세기준 및 벌금형, 행정질서벌(과태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명목소득 및 자산가치 상승으로 가중된 국민의 체감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및 실생활과 직결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 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29년 동결), 배우

자 상속공제(최저한도 5억원, 29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10년 동결), 근로자 보장정보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24년 동결) 등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기준·공시지가 등을 현재의 물가 수준 및 자산가치 변동에 맞추어 현실화한다.

2. 국회와 정부는 형법상 벌금의 하한(현행 5만원), 과료의 범위(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및 각종 개별법상 행정질서벌 등을 물가상승률 및 소득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징역형 대비 벌금형의 비례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금전적 제재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정비한다.

3. 정부는 경제성장률 및 화폐가치 변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현실과 괴리된 공제액, 비과세기준, 공시지가 산정 체계 및 각종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나아가 물가 변동분을 조세제도에 자동 반영하는 물가연동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제안이유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규정된 각종 공제액, 비과세기준, 공시지가 등 과세기준 및 벌금·과료·과태료 등의 제재기준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의 경제적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민 재산권 및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등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각종 공제·비과세기준이 물가와 소득 수준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실질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있음.

또한, 형법 및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벌금의 하한과 과료의 범위, 각종 과태료 등의 금액기준 역시 물가상승과 소득수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과거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설정된 과세기준을 현재의 물가수준, 소득 및 자산가치의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여야 함. 또한, 서로 다른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전적 제재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상당수 해외국가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가 물가수준에 연동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및 화폐가치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실과 괴리된 과세기준 및 금전적 제재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